

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579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16. 12. 19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6년 4월 20일 우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143번 「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같은 해 12월 1일 발의한 의안번호 1557번 같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,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가. 제안이유

- ‘공공건축물에 대한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의 경관심의’ 대상을 ‘총공사비’에서 ‘층수’ 또는 ‘연면적’ 기준으로 변경하되,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층수나 연면적에 상관없이 시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 건축위원회로 심의 대상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함.
-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 건축위원회의 경관심의 대상을 ‘총공사비 5억원’에서 “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,000㎡ 이상”으로 하되, 시장(산하기관장 포함)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층수나 연면적에 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함(안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).
- 나. 둘째,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경관관련 위원회에 ‘도시공원위원회’를 추가하여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도시공원내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하도록 함(안 제25조제2항제6호 신설).
- 다.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 등을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함(안 제8조, 안 제9조제2항, 안 제12조제8항, 안 제16조제4호, 안 제21조제3항, 안 제25조제4항제4호, 안 제26조제1항제4호, 안 제27조).

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하여는”과 “범위 안에서”를 각각 “대해서는”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매 5년마다”를 “5년마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8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고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6조제4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2항제2호 중 “총공사비 5억원”을 “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,000㎡”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(시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)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제2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6. 도시공원위원회 : 법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도시공원내 건축물

제26조제1항제4호 중 “인정하는”을 “인정할”으로 한다.

제27조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고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제외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)</p> <p>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당해</u>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</p> <p>2. <u>당해</u>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</p> <p>3. <u>당해</u>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④ 공청회의 주재자·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<u>대하여는</u>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p> <p>제9조(경관사업의 대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2호 도시경관의 기록화사업은 <u>매 5년마다</u>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·보관하여 경관변천사의 기초자료 및 도시경관관리의 정책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</p> <p>제12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)</p> <p>①~⑦ (생략)</p> <p>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<u>대하여는</u>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p> <p>제16조(경관협정의 내용)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<u>당해</u>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</p> <p>제21조(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<u>당해</u>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해당</u> -----</p> <p>2. <u>해당</u> ----- -----</p> <p>3. <u>해당</u> ----- -----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대해서는</u> ----- <u>범위에</u> <u>서</u> ----- -----.</p> <p>제9조(경관사업의 대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5년</u> <u>마다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12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)</p> <p>①~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----- ----- <u>대해서는</u> 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6조(경관협정의 내용)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해당</u> ----- -----</p> <p>제21조(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.</p>

제24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

- ① (생략)
- ②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, 그 미만인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<신설>

제25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

- ① (생략)
- ② 영 제22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~5. (생략)

<신설>

- ③ (생략)
-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~3. (생략)
 - 4.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·연구

제26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-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~3. (생략)
 - 4.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, 경관사업 시행자, 협정체결자,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제27조(수당 등)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. 다만,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4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
----- .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,000㎡ -----
----- .
3.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(시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)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제25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
----- .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도시공원위원회 : 법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도시공원내 건축물
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-----
----- .
1~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-----

제26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- ① -----
----- .
1.~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 인정할 -----

----- .

제27조(수당 등) -----
----- 대해
서는 -----

- 제외한다.